신설동역자이르네 오피스텔 분양광고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신설동역자이르네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신설동역자이르네 홈페이지(http://신설동역자이르네.com)를 통해 분양알림, 청약안내, 상담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별도공지이며 입장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장비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등 견본주택 운영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사가 고지한 해당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입장이 불가합니다.
※ 서류 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청약자 혹은 당첨 및 계약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입장은 입장 불가)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광고일(2022.04.21.) 기준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0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방법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자격인 시설득별시 동대문구는 청약과밀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양신고일(2022.04.20.광고일과 다름)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외에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자격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0조2, 동법 시행령 제0조0에 따른 분양 호실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4.20.광고일과 다름) 현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0조0의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수분양자"는 "건본법" 제0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본법" 제0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0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 신청 시 공급계약 관련 증빙서류 (대출승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전매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0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센터 및 신설동역자이르네(02-959-7800)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청약홈 유무상 청약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 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반사항 등은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격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신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또는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청약홈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공동인증서(를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오피스텔	○	○	○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0조 및 시행령 제0조에 의거 [동대문구청 0022-견축과-분양신고-2(2022.04.20.)]로 분양신고**

■ **공급대상물**
- 공급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6-4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4층 ~ 지상 20층(오피스텔동 18층) 3개동 중 오피스텔 95실 – 대지면적 : 4,431.10㎡ –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29,680.508㎡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계획됨. – 용도지역지구 등 : 제1지구단위계획구역, 제0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경관지구, 주차장법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공동으로 사용하게 계획되었으며 및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4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 일부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전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체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등)은 각 시설별 전유면적(전용면적, 주택공급면적, 분양시설면적)의 함께 비율에 따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공공기여시설의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호실 또는 세대 당 개인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02-959-7800)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의 각각의 비율로 분양하므로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만큼 분양되며 일정, 시설 장치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의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건축주택사업자 : 에스티에스개발(주) ■ 시공사 : 주관 자이에스앤디(주) / 지원 지에스건설(주) ■ **분양대행사 :** (주)현합플래닝 ■ **신탁업자(시행사확약)겸 분양대금 관리자 :** 코리아신탁(주)

■ **시행사확약 :** 에스티에스개발(주) ■ **시공사확약 :** 주관 자이에스앤디(주) / 지원 지에스건설(주) ■ **분양대행사 :** (주)현합플래닝

■ **신탁업자(시행사확약)겸 분양대금 관리자 :** 코리아신탁(주)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입장은 입장 불가)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본 견축물은 건축법 제0조 제0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 되었으며, 동법 제0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내진능력은 지도등급(Ⅶ-0.204g)입니다.**

지역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	내진설계범주	건물 중요도
0.176(서울시)	S4	1.2	D	1

■ **입주예정일 : 2024년 11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공급대상 및 공급금모** (단위 : ㎡, 호실)

군	타입	공급호수(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1군	35A	24	35.925	14.872	50.797	38.135	88.932	13.277
	35B	12	35.547	14.716	50.263	37.734	87.997	13.137
	35LA	8	35.925	14.872	50.797	38.135	88.932	13.277
	35LB	4	35.547	14.716	50.263	37.734	87.997	13.137
2군	52	10	52.931	21.912	74.843	56.187	131.031	19.562
	52T	10	52.931	21.912	74.843	56.187	131.031	19.562
	54	11	54.893	22.725	77.618	58.270	135.888	20.287
	54L	4	54.893	22.725	77.618	58.270	135.888	20.287
	55	4	55.990	23.179	79.169	59.434	138.603	20.693
	55L	8	55.990	23.179	79.169	59.434	138.603	20.693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은 「주택법」 제0조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0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4.20.)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마감시까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청약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1세대 1청약통장만 인정하며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갖춘 세대주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제한 :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4.21.)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0조의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수분양자"는 "건본법" 제0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본법" 제0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0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 신청 시 공급계약 관련 증빙서류 (대출승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①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신탁법"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따라 "에스티에스개발(주)"와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시행의 조정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로서 건본주택건립 및 운영, 분양을 위한 일체의 광고홍보 등 분양관련 일체 행위 등는 "에스티에스개발(주)"이 "계약자(수분양자)"로 인지하고 동의한다. 또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해지 등의 경우에도 "에스티에스개발(주)"이 부담하며, "에스티에스개발(주)"는 "코리아신탁(주)"가 "계약자(수분양자)"로 인지하고 동의한다. 또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해지 등의 경우에도 "에스티에스개발(주)"이 부담하며, "에스티에스개발(주)"는 "코리아신탁(주)"가 "계약자(수분양자)"로 인지하고 동의한다.
②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③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대한 지급계좌 등록은 분양계약으로 부여하고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 이외 지급계좌 등록은 불가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수분양자)"는 반드시 "코리아신탁(주)"의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코리아신탁(주)"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⑤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⑥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⑦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⑧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⑨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⑩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⑪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⑫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⑬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⑭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⑮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⑯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⑰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⑱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⑲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⑳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㉑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㉒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㉓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㉔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㉕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㉖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㉗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㉘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㉙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㉚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㉛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㉜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㉝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㉞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㉟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㊱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㊲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㊳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㊴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㊵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㊶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㊷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㊸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㊹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㊺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㊻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㊼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㊽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㊾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㊿ 분양수입금은 "코리아신탁(주)"의 분양수입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에스티에스개발(주)"의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코리아신탁(주)"가 "에스티에스개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청약신청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오피스텔	○	○	○	○

■ 계약금은 분양대금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 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계약금)	수협은행	1010-2158-47338	코리아신탁(주)	입금 시 층, 세대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다103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 →1030501홍길동)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 (계약서 명시)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수협은행 1010-21-58-4738, 코리아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1103동) 5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30501 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해당 지정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합니다. •